고 성 군 공 인 조 례 중 개 정 조 례 안

(의안번호 제420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6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13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16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6. 16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주요골자

○ 군 본청의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종전의 관인규정을 준용하던 것을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함.(안 제4조 1항)

나. 참고사항

○ 사무관리규정(1991.6.19 대통령령 제13390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1991. 6. 19 사무관리규정(대통령령 제13390호)의 제정 시행과 함께 종전의 관인 규정이 폐지 되었기에 고성군공인조례 중 상위규정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 : 없음.

5. 토 론 : 없음.

6. 심사결과

○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